

제2편 위원회	시설공간조정위원회	문서번호	2-01-27
		제정일자	2011.06.01.
		개정일자	2016.08.01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본 대학 시설공간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시설과 공간에 대한 계획.활용.변경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①신축건물의 수용 계획 및 건물 활용에 관한 사항
- ②공간의 재배치 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
- ③기타 총장이 공간조정에 관해 심의를 요청한 사항

제3조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학사부총장으로 한다.

②당연직 위원은 기획처장, 교학처장, 사무처장, 평생교육처장, 시설관리센터소장이 되고,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 한다.

③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시설관리센터 팀장이 된다.

제4조(임기)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
- ①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.
- ②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장할 수 있다.

제5조(회의) ①회의는 관련 부서의 심의 요청이 있을 경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(기타)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